

부설연구소연구원 임용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본 대학교 각 연구소의 연구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연구원의 분류) 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특별연구원, 전임연구원으로 분류하며, 통칭하여 연구원이라한다.

제3조 (연구보조원) 연구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임용절차) 연구소장은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연구원 추천서(서식1)를 첨부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.

제5조 (임용) ①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 (자격기준)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책임연구원 :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원

② 특별연구원 : 우리대학이외의 전임교원,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자.

③ 전임연구원 : 연구수행에 적합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및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

④ 연구보조원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전문대학 학력 이상의 소지자

제7조 (임무) 각 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술연구 수행
2. 연구보조 업무
3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.

제8조 (임기) 1. 연구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.

2.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 퇴직한다.

제9조 (급여) 1. 유급연구원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월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소장이 정한다.

2. 무급연구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0조 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2월17일부터 적용한다.

(서식 1)

연구원 추천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최종 학위 | | 연구원의 종류 | |
| 연구원의 담당업무 | | | |
| 연구원의 경력 및 신력 | | | |
| 임용기간 | | | |
| 급여 | | | |

첨 부 : 이력서 1부
최종학위증명서 1부

위 사람은 본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

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연구소장 직인